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2200 제출연월일: 2024. 7. 24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 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 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 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1항제4호 중 "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"를 "된 경우."로 하고,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제재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) 제2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(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	제26조(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
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탁	등) ①
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	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	
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	
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	
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	<u>.</u>
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	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	
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	
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위	4
탁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	
하지 못하게 <u>된 날부터 30일</u>	<u>된 경우.</u> <u>다만,</u>
이 지난 경우 <단서 신설>	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
	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
	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
	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	경우는 예외로 한다.
5. ~ 8. (생 략)	5. ~ 8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생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